

임원 등 선임규정

계리사회 내규 제 9 호
제 정 2023. 06.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투표소의 결정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적격 여부 확인
3. 입후보 등록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판정
4. 투표 및 개표 사무의 관리
5. 투표 결과에 따른 임원 후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입후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회원의 제보 등에 의한 부당한 선거운동의 조사, 조정 등 조치
7. 그 밖에 임원 선거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사 1인
2.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감사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의 의한 위원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후보자 등록을 한 자(이하 “입후보자”라 한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회장은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차기 회장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항에서 정한 선거일로부터 5주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소집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입후보) ① 정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되는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의 양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입후보 신청서 및 동의서
2. 학력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이력서
3. 정견서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5. 반명함판(3X4cm) 이상 사진 1매

② 회장의 입후보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보험계리사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본회 정회원
2. 직전 3개년 개인회비(후보자 공모 전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자
3. 정관 제9조, 징계규정 제3조 및 기타 관계 법령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3인을 포함하여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을 추천하는 회원은 입후보자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중추천이 있을 때에는 우선 등록신청 접수된 입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한다.

제6조(선거 공보 등의 통지) ① 회장은 위원회 소집 이후 3일 이내로 선거일과 함께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전회원에게 전자메일로 1회 이상 발송하고, 이를 본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후보자 등록신청서류가 적격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선거일 2주전까지 이력서 및 정견서를 전회원에게 전자메일로 1회 이상 발송하고, 이를 본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공보 및 정견서를 투표권을 가진 임원에게 선거일 10일전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 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 경우 정견발표 동영상의 제작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입후보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견발표 동영상을 입후보자 정견 토론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규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장후보 선출) ① 회장후보의 선출은 위원회가 정하는 투표소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선거를 위하여 정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투표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제외한다.

③ 회장후보는 투표임원 종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동일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선거운동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통지하는 선거공보 외에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공시물(인쇄물, 인터넷 공지, 전자메일 등)도 회원에게 배포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1. 입후보자

2. 회원

3. 회 사무직원

②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제출 개시일부터 개별적인 정견발표회나 연설회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입후보자등은 임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후보자등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후보자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선거관리반 구성 및 투표방법 등) ① 위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사무국 내에 선거관리반을 구성하고 선거관리원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반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반장을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반은 선거인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확인한 후 선거인으로부터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표소에서 선택한 입후보자 1인의 기표란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투표한다.

제10조(부재자 투표)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에 직접투표 할 수 없는 임원의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부재자 투표는 위원회가 정한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에 신청한 선거인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 부재자 투표는 거소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거일 당일 투표 종료 시간 전까지 도착한 투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기타 부재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투표용지) 제9조제3항의 투표용지 및 부재자용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서 위원장 날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제12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선거주지사항에 포함하여 사전에 선거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투표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마감은 투표마감시간 현재 기표소에 입장한 선거인까지로 한다.

③ 개표는 투표마감 후 미리 정한 개표소에서 위원장의 지휘 하에 실시한다.

제13조(무효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의 투표용지
2. 위원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부재자 투표는 제외한다)
4.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재자 투표용지
5. 해당란 외에 기표된 투표용지
6.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용지
7. 공란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② 제1항 각 호외에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용지 등의 무효여부 판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4조(당선자 확정) ①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한 후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제1항의 개표결과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자(이하 “당선자”라 한다)를 확정, 선포한다.

③ 당선자는 현재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정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회장 후보 3인 이내, 상임이사 후보 1인 이내, 감사 후보 2인 이내로 확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된 임원 후보의 적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 등의 선임) ① 당선자는 현재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으로 선임된다.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후보자의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등) ① 위원장은 선거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투표용지

를 투표분과 미교부 분으로 구분하여 매수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와 함께 회장에
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본회가 선거일 이후 6개월간
보관하고, 위원장 입회하에 폐기한다.

③ 선거관리사무에 관여한 위원회 및 회 직원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에 참
여한 임원의 명단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임직원의 중립의무 등) 이 회의 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른 선거관련사무 및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선거관련사무 외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관여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부칙(2023. 0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